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0. 21 선고 2022가단302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627,417원을 삭제하고, 위 18,627,417원을 원고에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파악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 발생

- 1) 원고는 2018. 3.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기한이 2019. 3. 14.까지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D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고, B은 E은행에 D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충남 예산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통틀어 'B 소유 12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3)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이 연장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21. 3. 12.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1억 3,77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증조건 변경을 E은행에 통지하였다.
- 4) D가 2020. 11. 12.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E은행은 2021. 1. 15. 원고에 D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6. 11. D의 대출원리금 139,969,790원(원금 137,700,000원 + 이자 2,269,7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5) 원고는 2021. 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카단5028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B 소유 12필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1. 1. 21.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B은 2014.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으로부터의 '2013. 10. 3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20.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각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등기'라 하고, 그로써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E은행의 경매신청과 원고의 배당이의 등

1) E은행은 2021.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B 소유 12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1. 3. 2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경매법원은 B 소유 12필지가 매각된 후(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2022. 7. 20.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14,782,714원을 E은행에 223,291,253원(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2순위, 100%), 피고에게 18,627,417원(근저당권자, 3순위, 18.63%), 원고에 총 649,448원(가압류권자, 4순위, G, H 토지에 관하여 618,190원, K 토지에 관하여 31,258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627,417원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 2022. 7. 22.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던 청구취지를 주문 제2항과 같은 배당이의의 소로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된 18,627,41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

B과 피고 가족은 아버지 세대부터 수십 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B과 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진정하게 선의로 설정되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2018. 3.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D가 2020. 11. 12.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B이 2020. 12.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구상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1. 15. E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고 2021. 6. 11. E은행에 D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139,969,790원,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2조 참조).

나. 사해행위와 B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각 기재, 인천 계양구와 충남 예산군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M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서초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적극재산으로 B 소유 12필지, N 답 1,484㎡, 2021년식 쏘렌토 승용차가 있었고, 그 가액은 위 12필지 495,622,000원(이 사건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 N 토지 3,500만 원(B이 2021. 1. 9. 매도한 가격), 쏘렌토 승용차 약 4,000만 원 등 총 570,622,000원이었으며, 소극재산으로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여 원 외에도 기업은행에 대한 8억여 원 채무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였다.

그런데 B은 그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도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악의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과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을 제2, 3,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B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B의 부친 L이 1984. 6. 10. 피고 부친 O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제2호증), B의 동생 P가 1994년경 피고로부터 결혼자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가 기재된 P 명의 확인서(을 제3호증), 피고가 2006. 9. 1. L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3,550만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모두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B이 L과 P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 시기를 특정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까지 길게는 35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 채무가 변제되는 등 소멸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B이 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면 그 역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등 참조).

3) 설령 피고 주장대로 B과 피고 가족 사이에 그 구성원들의 금전거래를 일괄 정산하여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L은 2010. 10. 26. 그 소유의 Q 전 710㎡(합병 전 R, S 토지 포함)를 피고에게 2,15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그 이전에 있었던 채권채무관계는 위 매매 당시에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B과 피고 가족 사이에 위 매매 이후 거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139,969,790원을 초과하는 사실,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원고가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627,417원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627,417원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권보원

별지

목 록

1. 충남 예산군 T 대 783㎡
2. 충남 예산군 U 전 608㎡
3. 충남 예산군 V 전 195㎡
4. 충남 예산군 W 전 228㎡
5. 충남 예산군 X 전 1137㎡
6. 충남 예산군 Y 전 271㎡
7. 충남 예산군 Z 대 664㎡. 끝.

